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등 처벌대상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12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첨단전략기술 침해행위등 처벌대상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 ..	2
2. 부칙	9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소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7.
3. 회부연월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Ⅲ. 검토의견

1. 국가첨단전략기술 침해행위등 처벌대상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침해행위등”) 금지 유형 중 손해를 가할 목적 등으로 행하는 침해행위등 유형(제2호, 제6호, 제7호)에 대해 행위목적과 무관하게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변경하고,

침해행위등에 대한 처벌시 구성요건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변경하여 수사·공소과정상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2. ----- ----- -----

현행	개정안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u>손해를 가할 목적으로</u>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 5. (생략)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u>사용되게 할 목적으로</u>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u>손해를 가할 목적으로</u>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8. (생략)	----- -----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 ----- ----- 3. ~ 5. (현행과 같음) 6. ----- <u>사용될 것을 알면서</u>----- ----- ----- 7. ----- ----- ----- ----- ----- -----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 -----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u>사용되게 할 목적으로</u>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 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0조(벌칙) ① ----- ----- <u>사용될 것을 알면서</u> ----- ----- ----- ----- -----.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u>사용되게 할 목적으로</u> 제15조제5호 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 - <u>사용될 것을 알면서</u>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5조는 침해행위등의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제2호, 제6호, 제7호는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가할 목
적 등의 ‘목적성’을 가지고 전략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표 2] 침해행위등의 유형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취·기망·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
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u>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u>으로 전략기
술을 <u>유출</u>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u>사용 또는 공개</u>하거나 제3자가 사
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 |
|--|

- 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 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현행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은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침해행위등(중대한 과실로 범하는 제4호 제외)을 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위 세 가지 유형의 침해행위등은 목적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총 7가지 유형의 침해행위등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도 목적성이 요구됨.

그러나 단순히 기술 사업성 및 가치 등을 인식하고 침해행위등을 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없고, 이같은 목적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으면 구체적인 행위자의 직업, 경력, 행위와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목적성 여부를 판단¹⁾하게 되므로, ‘목적성’은 실무상 입증부담이 큰 편임.

최근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략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업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유출 방식은 단순 도면·문서 유출에서 인력 스카우트,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목적성을 입증하기 위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관시사항】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가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같은 법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일부 침해행위등의 성립요건 및 벌칙의 구성요건으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전략기술임을 알면서도 유출·침해한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침해행위등의 처벌 실효성과 기술유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동 법률에 따른 전략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보다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기술보호법」 보다 보호 및 관리 수준이 낮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산업기술보호법」²⁾은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를 개정하여 ‘고의성’ 또는 ‘목적성’과 무관하게 침해행위등을 모두 금지하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을 전제로 한 벌칙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그런데 동 개정안과 「산업기술보호법」을 비교하면,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을 전제로 한 벌칙의 구성요건으로 두 법률 모두 ‘고의성’을

2)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일부개정]

요구하게 되지만, 침해행위등의 성립요건으로 개정안은 ‘고의성’을 요구하는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은 ‘고의성’을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고 유출행위 자체를 금지하여 서로 다른 수준으로 규율하게 됨.

즉,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동 개정안을 비교하면 전략기술보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의 침해행위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규율하게 되므로 두 법률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등의 구성요건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부칙

안 부칙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전략기술 보호수준을 조기에 강화하고자 함(안 부칙).

[표 2] 개정안 부칙

개 정 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개정안은 침해행위등의 성립요건과 벌칙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전략기술 침해행위등의 처벌강화 시급성 외에도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수용성 제고 필요성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산업기술보호법」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타법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u>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u>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u>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u>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 등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타법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일부개정]
<u>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u>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6조(벌칙) ① <u>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u>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10.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11. 제11조제6항·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제10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36조(벌칙) ① <u>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u>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타법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일부개정]
② <u>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③ <u>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④ <u>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⑤ ~ ⑧ (생략)	② <u>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③ <u>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④ <u>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⑤ ~ ⑧ (현행과 같음)